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	---

제출년월일 : 1997.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파주시 행정구역상 아파트 신축으로 행정수행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과대반을 현실에 맞게 분리·조정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이와 관련된 반명칭 개정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금촌 1 동 15통을 15통, 18통으로 분리함에 따라 반명칭을 조정하고, 금촌 2 동 6통을 6통, 9통으로 분리함에 따른 반명칭 조정 및 12개반을 증설하고, 조리면 봉일천2리 4개반, 봉일천6리 3개반 등 19개반을 증설하면서, 아울러 30개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안 제 4 조).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83리통 1461반”을 “285리통 1480반”으로, 리소계 “258리 1226반”을 “258리 1233반”으로, 통소계 “25통 235반”을 “27통 247반”으로 하며, 조리면 계 “23리 122반”을 “23리 129반”으로, 금촌1동 계 “17통 117반”을 “18통 117반”으로, 금촌2동 계 “8통118반”을 “9통 130반”으로 하며, 금촌1동 “17통” 다음에 “18통”을 신설하고, 금촌2동 “8통” 다음에 “9통”을 신설하며, 조리면 봉일천2리 “8반” 다음에 “9반내지 12반”을 신설하고, 봉일천6리 “5반” 다음에 “6반내지 8반”을 신설하며, 금촌1동 “15통 14반내지 19반”을 “18통 1반내지 6반”으로, 조정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하며, 금촌2동 “6통 11반 내지 13반”을 “9통 1반내지 3반”으로, “6통 9반내지 10반”을 “9통 5반내지 6반”으로 하고, “9통 4반, 7반내지 17반”을 각각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지 」

읍면동	통·리	반 명	관 합 구 역
조리면	봉일천2리	제 9반	262, 태형내산마을아파트 101동 101호 ~ 1803호
		제10반	262, 태형내산마을아파트 101동 104호 ~ 1806호
		제11반	262, 태형내산마을아파트 102동 101호 ~ 1804호
		제12반	262, 태형내산마을아파트 102동 105호 ~ 1408호
	봉일천6리	제 6반	147, 봉일천동문아파트 101호 ~ 1102호
		제 7반	147, 봉일천동문아파트 103호 ~ 2005호
		제 8반	147, 봉일천동문아파트 106호 ~ 1807호
금촌1동	18 통	제 1반	금촌동중 10, 18, 산7, 부건연립
		제 2반	금촌동중 11, 동문아파트 101동
		제 3반	금촌동중 11, 동문아파트 201동
		제 4반	금촌동중 11, 동문아파트 401동
		제 5반	금촌동중 11, 동문아파트 301동
		제 6반	금촌동중 11, 동문아파트 501동
금촌2동	9 통	제 1반	금촌동중 234, 두보파트 101동 101호 ~ 1505호
		제 2반	금촌동중 234, 두보아파트 101동 106호 ~ 1109호
		제 3반	금촌동중 234, 두보아파트 102동
		제 4반	금촌동중 234, 두보아파트 103동
		제 5반	금촌동중 232, 대영장미아파트 101동
		제 6반	금촌동중 230, 대영장미아파트 102동
		제 7반	금촌동중 231, 대영장미아파트 201동
		제 8반	금촌동중 230, 대영장미아파트 301동
		제 9반	금촌동중 230, 대영장미아파트 302동
		제10반	금촌동중 250, 주공아파트 101동

읍 면	리	반 명	관 할 구 역
금촌2동	9 통	제11반	금촌동중 250, 주공아파트 102동
		제12반	금촌동중 250, 주공아파트 103동
		제13반	금촌동중 250, 주공아파트 104동
		제14반	금촌동중 250, 주공아파트 105동
		제15반	금촌동중 250, 주공아파트 106동
		제16반	금촌동중 250, 주공아파트 107동
		제17반	금촌동중 250, 주공아파트 108동
		이	하 여 백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읍면동	통리명	반 명	관 할 구 역	읍면동	통리명	반 명	관 할 구 역
총 계	283	1,461		총 계	285	1,480	
소 계	258리	1,226		소 계	258리	1,233	
조리면	23리	122반		조리면	23리	129반	
	봉일천 2리	1 반 ~ 8 반 (생 략)			봉일천 2리	(현행과 같음)	
		(신설)			9반	262, 태형내산마을APT 101동 101호 ~ 1803호	
		(신설)			10반	262, 태형내산마을APT 101동 104호 ~ 1806호	
		(신설)			11반	262, 태형내산마을APT 102동 101호 ~ 1804호	
		(신설)			12반	262, 태형내산마을APT 102동 105호 ~ 1408호	
	봉일천 6리	1 반 ~ 5 반 (생 략)			봉일천 6리	(현행과 같음)	
		(신설)			6 반	147, 봉일천동문아파트 101호 ~ 1102호	
		(신설)			7 반	147, 봉일천동문아파트 103호 ~ 2005호	
		(신설)			8 반	147, 봉일천동문아파트 106호 ~ 1807호	
소 계	25통	235반		소 계	27통	247반	
금 1	17통	117반		금 1	18통	117반	
	15통	1 반 ~ 13 반 (생 략)			15통	(현행과 같음)	
		14반 금촌동중 10, 18, 산7, 부건연립			18통	1 반 금촌동중 10, 18, 산7, 부건연립	
		15반 금촌동중 11, 동문아파트 101동				2 반 금촌동중 11, 동문아파트 101동	
		16반 금촌동중 11, 동문아파트 201동				3 반 금촌동중 11, 동문아파트 201동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읍면동	통리명	반명	관할구역	읍면동	통리명	반명	관할구역
금 1 촌동	15통	17반	금촌동중 11, 동문아파트 401동	금 1 촌동	18통	4 반	금촌동중 11, 동문아파트 401동
		18반	금촌동중 11, 동문아파트 301동			5 반	금촌동중 11, 동문아파트 301동
		19반	금촌동중 11, 동문아파트 501동			6 반	금촌동중 11, 동문아파트 501동
금 2 촌동	8 통	118반		금 2 촌동	9 통	130반	
		6 통	1 반 ~ 8 반 (생략)			6 통	(현행과 같음)
		11반	금촌동중 234, 두보아파트 101동 101호 ~ 1505호			9 통	1 반 금촌동중 234, 두보아파트 101동 101호 ~ 1505호
		12반	금촌동중 234, 두보아파트 101동 106호 ~ 1506호			2 반	금촌동중 234, 두보아파트 101동 106호 ~ 1109호
		13반	금촌동중 234, 두보아파트 102동			3 반	금촌동중 234, 두보아파트 102동
		(신설)				4 반	금촌동중 234, 두보아파트 103동
		9 반	금촌동중 232, 대영장미아파트 101동			5 반	금촌동중 232, 대영장미아파트 101동
		10반	금촌동중 230, 대영장미아파트 102동			6 반	금촌동중 230, 대영장미아파트 102동
		(신설)				7 반	금촌동중 231, 대영장미아파트 201동
		(신설)				8 반	금촌동중 230, 대영장미아파트 301동
		(신설)				9 반	금촌동중 230, 대영장미아파트 302동
		(신설)				10반	금촌동중 250, 주공아파트 101동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읍면동	통리명	반명	관할구역	읍면동	통리명	반명	관할구역
금촌동 2		(신설)		금촌동 2	9통	11반	금촌동중 250, 주공아파트 102동
		(신설)				12반	금촌동중 250, 주공아파트 103동
		(신설)				13반	금촌동중 250, 주공아파트 104동
		(신설)				14반	금촌동중 250, 주공아파트 105동
		(신설)				15반	금촌동중 250, 주공아파트 106동
		(신설)				16반	금촌동중 250, 주공아파트 107동
		(신설)				17반	금촌동중 250, 주공아파트 108동
	이	하	생략		이	하	생략

④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에는 都市의 形態를 갖춘 地域에는 洞을, 그밖의 地域에는 邑·面을 두되,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경우에는 당해 區에 邑·面·洞을 둘 수 있다. <新設 94·3·16, 94·12·20>

第2節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

第4條 (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 ①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은 中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할 때에는 法律로써 정하되, 市·郡 및 自治區의 管轄區域 境界變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하거나 그 名稱 또는 區域을 變更할 때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의 議會(이하 “地方議會”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의 名稱과 區域은 中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④里의 區域은 自然의 村落을 기준으로 하되, 그 名稱과 區域은 中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洞·里에 있어서는 行政能率과 住民便宜를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洞·里를 2개이상의 洞·里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洞·里를 하나의 洞·里로 운영하는 등 行政運營上 洞·里(“行政洞·里”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第5項의 行政洞·里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

第5條 (區域變更, 廢置·分合時의 事務와 財産의 承繼) ①地方自治團體의 區域 變更이나 廢置·分合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地域을 管轄하게 된 地方自治團體가 그 事務와 財産을 承繼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地域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및 財産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市·道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그 事務와 財産의 限界 및 承繼할 地方自治團體를 지정한다. <改正 94·12·20>

第6條 (事務所의 所在地) ①地方自治團體의 事務所의 所在地와 自治區가 아닌 區 및 邑·面·洞의 事務所의 所在地는 中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새로 設定하는 경우에는 市·道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의,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며, 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에 있어서는 그 市·郡 및 自治區의 條例로 정한다. 이 條項에 있어서는 洞은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洞을 말한다. <改正 94·12·

행정구역조정현황

□ 총괄

시	읍면동	현행	조정	증감	비고
과주시	계	1,461	1,480	+ 19	
	문산읍	284	284	-	
	과주읍	146	146	-	
	법원읍	155	155	-	
	월릉면	50	50	-	
	탄현면	82	82	-	
	교하면	140	140	-	
	조리면	122	129	+ 7	
	광탄면	109	109	-	
	과평면	42	42	-	
	적성면	89	89	-	
	군내면	7	7	-	
	금촌1동	117	117	-	
	금촌2동	118	130	+ 12	

반 조 정 내 역

구 분			현 행			조 정 후			조 정 사 유
시	읍면동	통·리	반명	가 구	인 구	반 명	가 구	인 구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 2리	8 반	251	839	8 반	24	83	태형내산마을아파트 18층 2동 (101동, 102동) 신축 으로 227세대가 입주하여 반규모가 비대하여 주민 편익에 도모코자 반 분리
						9 반	46	155	
						10반	54	184	
						11반	64	210	
						12반	63	207	
		봉일천 6리	5 반	154	533	5 반	36	116	봉일천동문아파트 (20층) 1동 신축으로 118세대가 입주하여 주민편익에 도모 코자 반 분리
						6 반	20	88	
						7 반	60	204	
						8 반	38	125	
	금촌1동	15 통	14반	45	157	18통 1 반	45	157	15통이 2개통으로 분리 되어 반명칭 변경
			15반	111	370	2 반	111	370	
			16반	86	282	3 반	86	282	
			17반	55	180	4 반	55	180	
			18반	72	241	5 반	72	241	
			19반	66	211	6 반	66	211	
	금촌2동	6 통	11반	75	279	9 통 1 반	75	279	현재 6통을 아파트 단지와 분리 1개통을 증설함에 따라 아파트 기존반을 재조정하고, 두보, 대영장미 아파트 290대 입주로 2개반을 증설하고
			12반	48	185	2 반	48	185	
			13반	173	618	3 반	75	267	
						4 반	98	351	
			9 반	144	381	5 반	144	381	
			10반	322	1,091	6 반	130	440	

반 조 정 내 역

[illegible]

반 분 리 (통 합) 조 서

1. 분리(통합) 내용

조리면 봉일천2리 8반

⇒

조리면 봉일천2리 8반
조리면 봉일천2리 9반
조리면 봉일천2리 10반
조리면 봉일천2리 11반
조리면 봉일천2리 12반

2. 분리(통합)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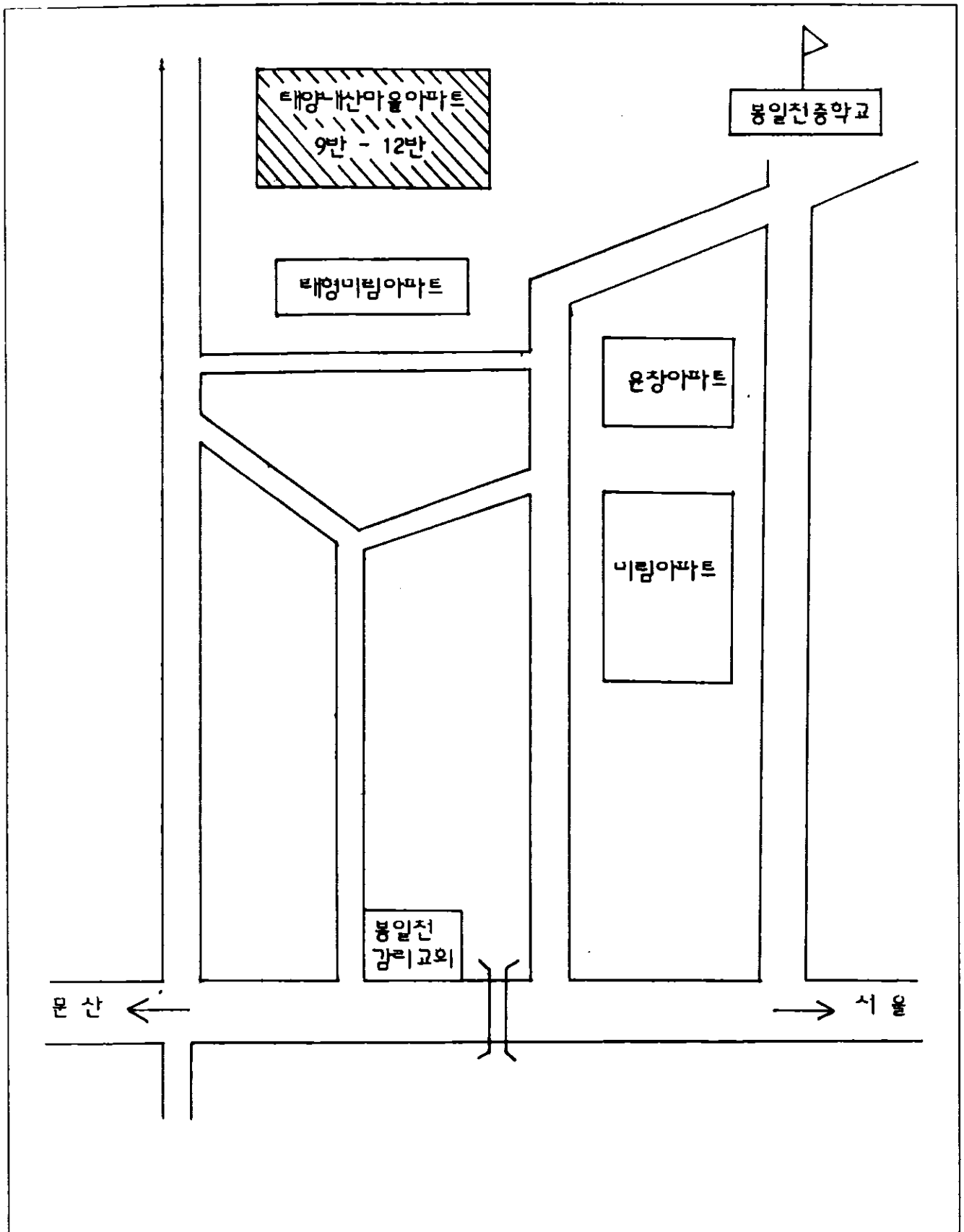
봉일천2리 8반 지역은 태형내산마을아파트 신축으로 251세대 83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과대반으로 4개반을 증설하여 주민편의 기여는 물론 효율적인 반운영을 도모코자 함.

3. 분리후 반세

구 분	면적 (km ²)	가구(세대)	인구(명)	비 고
현재의 반		251	839	
신설의 반		46	155	9 반
		54	184	10 반
		64	210	11 반
		63	207	12 반
잔 여 반		24	83	

위 치 도

조리면 봉일천2리



綜 合 意 見 書

대 상 지 역	봉일천2리 8반 → 봉일천2리 9반, 10반, 11반, 12반			
□ 봉일천2리 8반의 경우 - '96년 11월 태형내산마을아파트 227세대 756명이 입주하여 현재 반장 1명으로는 반상회 운영은 물론, 각종 조사 및 행정시책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 금번 기존 8반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4개반을 증설하면 리행정은 물론, 주민편익에도 도움이 되며 - 반증설은 이곳 주민들의 바램이므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4개반을 증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997년 1월 일 조리면장 안정환 (인)				
찬 반 표 시	찬 성		반 대	

綜 合 意 見 書

대 상 지 역	봉일천2리 8반 → 봉일천2리 9반, 10반, 11반, 12반		
□ 봉일천2리 8반의 경우 - '96년 11월 테형내산마을아파트 227세대 756명이 입주하여 현재 반장 1명으로는 반상회 운영은 물론, 각종 조사 및 행정시책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 금번 기존 8반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4개반을 증설하면 리행정은 물론, 주민편익에도 도움이 되며 - 반증설은 이곳 주민들의 바램이므로 리개발위원회와 반장들이 동의로 4개반을 증설코자 합니다. 1997년 1월 일 조리면 봉일천2리장 백 공 임 			
찬 반 표 시	찬 성		반 대

반 분 리 (통 합) 조 서

1. 분리(통합) 내용

조리면 봉일천6리 5반	⇒	조리면 봉일천6리 5반
		조리면 봉일천6리 6반
		조리면 봉일천6리 7반
		조리면 봉일천6리 8반

2. 분리(통합)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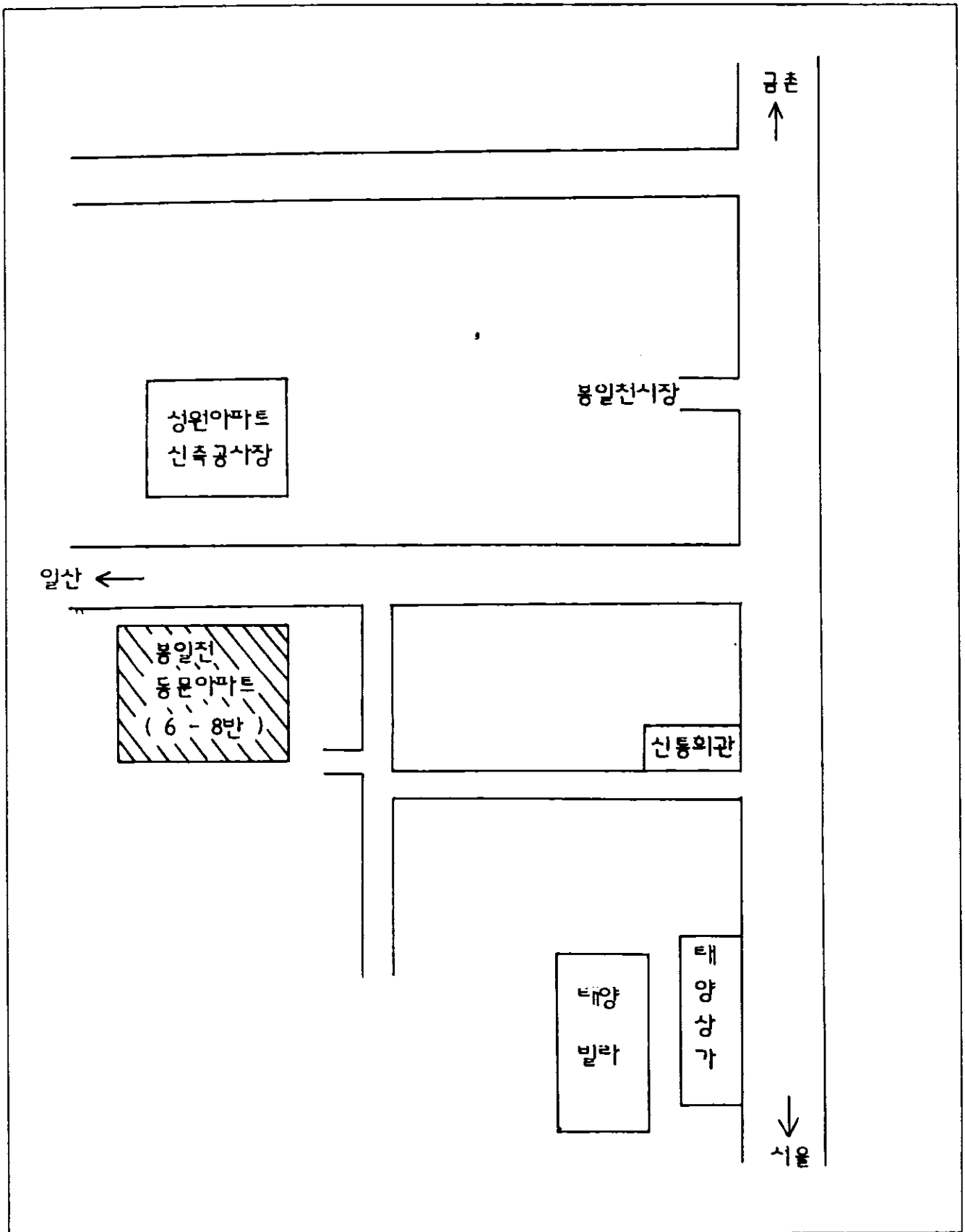
봉일천6리 5반 지역은 봉일천동문아파트 신축으로 154세대 53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과대반으로 3개반을 증설하여 주민편의 기여는 물론 효율적인 반운영을 도모코자 함.

3. 분리후 반세

구 분	면적 (km ²)	가구(세대)	인구(명)	비 고
현재의 반		154	533	
신설의 반		20	88	6 반
		60	204	7 반
		38	125	8 반
잔 여 반		36	116	

위 치 도

조리면 봉일천6리



綜 合 意 見 書

대 상 지 역	봉 일 천 6리 5반	→	봉 일 천 6리 6반, 7반, 8반
☐ 봉 일 천 6리 5반의 경우 - '96년 12월 봉 일 천 동 문 아 파 트 118세 대 417명 이 입 주 하 여 현 재 반 장 1명 으 로 는 반 상 회 운 영 은 물 론, 각 종 조 사 및 행 정 시 책 을 전 달 하 는 데 어 려 우 미 많 아 - 금 번 기 존 5반 을 현 실 에 맞 게 재 조 정 하 여 3개 반 을 증 설 하 면 리 행 정 은 물 론, 주 민 편 익 에 도 도 움 이 되 며 - 반 증 설 은 이 곳 주 민 들 의 바 람 이 므 로 주 민 의 견 을 적 극 수 렴, 3개 반 을 증 설 함 이 타 당 하 다 고 사 료 됨. 1997년 1월 일 조 리 면 장 안 정 환 			
찬 반 표 시	찬 성	 0	반 대

綜 合 意 見 書

대 상 지 역

봉 일 천 6리 5반

→

봉 일 천 6리 6반, 7반, 8반

☐ 봉 일 천 6리 5반의 경우

- '96년 12월 봉 일 천 동 문 아 파 트 118세대 417명이 입주하여 현재 반장 1명으로는 반상회 운영은 물론, 각종 조사 및 행정시책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 금번 기존 5반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3개 반을 증설하면 리행정은 물론, 주민편익에도 도움이 되며
- 반증설은 이곳 주민들의 바램이므로 리개발위원회와 반장들이 동의로 4개 반을 증설코자 합니다.

1997년 1월 일

조리면 봉 일 천 6리 장 최 봉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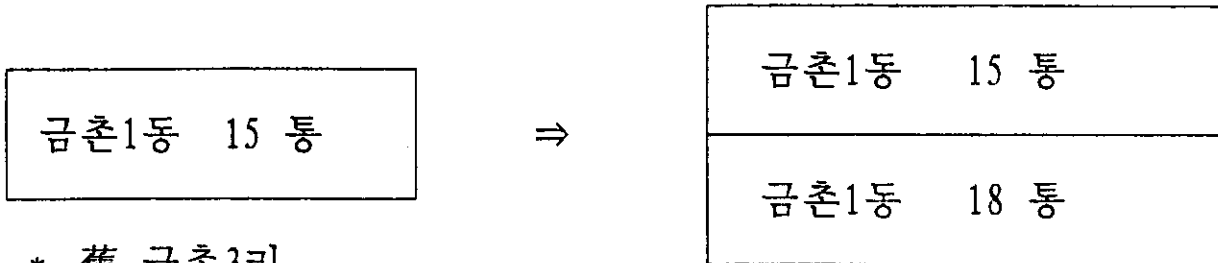
찬 반 표 시

찬 성

반 대

통 분 리 (통 합) 조 서

1. 분리(통합) 내용



* 舊 금촌3리

2. 분리(통합)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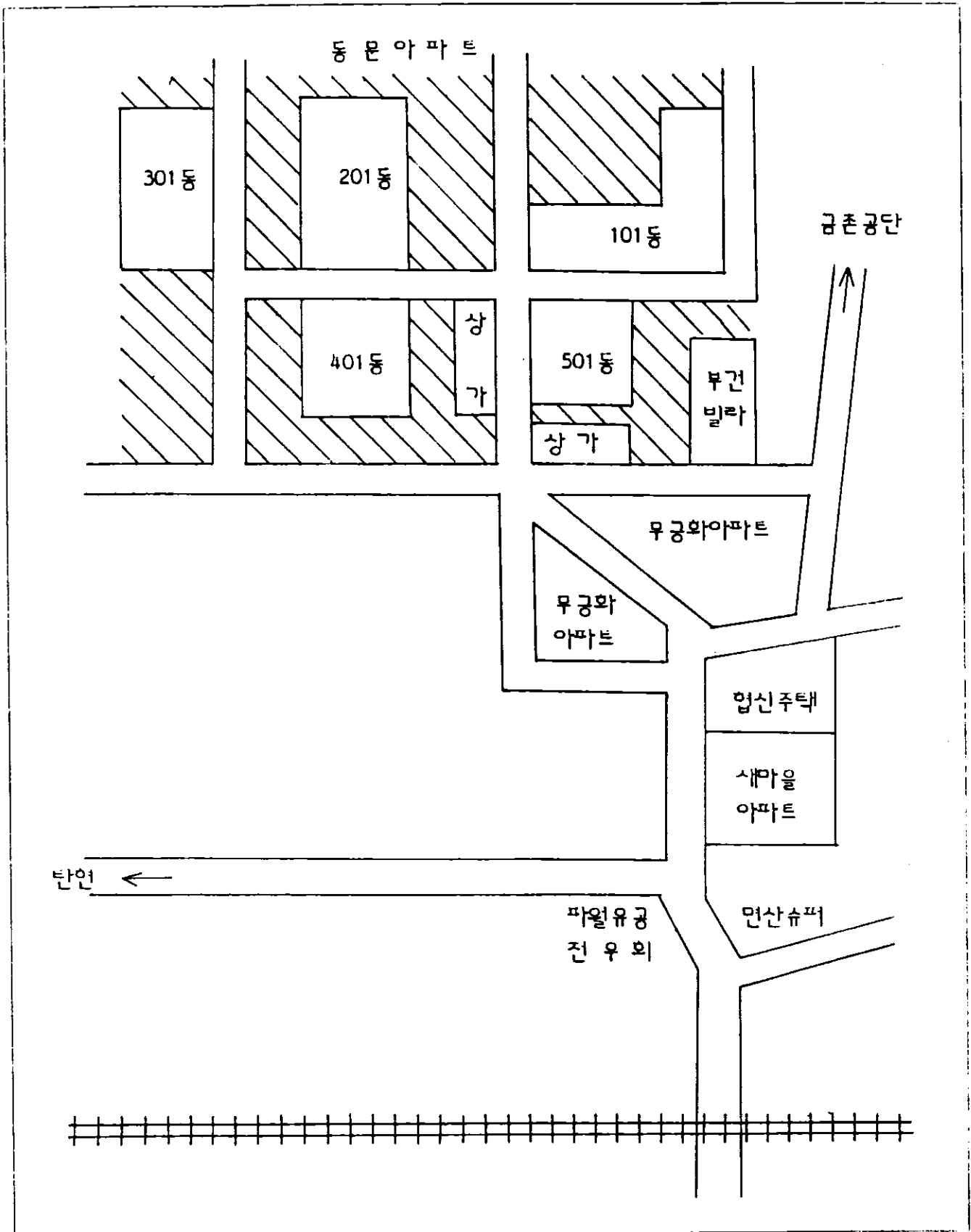
금촌1동 15통 지역은 1,218세대로서 1개통의 세대로는 과다하고 동문아파트 435세대와 나머지 세대와의 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있으며, 대다수 주민이 분통을 희망하고 주민편의 행정업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 2개통으로 분리 운영코자 함.

3. 분리후 통세

구 분	면적 (km ²)	가구(세대)	인구(명)	비 고
현재의 통	1.14	1,218	3,941	
신설의 통	0.29	435	1,441	18 통
잔 여 통	0.85	783	2,500	

위 치 도

금촌1동



중 합 의 건 서

대상지역	15 통	→	15 통 18 통
○ 15통 지역은 1,218세대에 3,941명의 인구로서 금촌1동 17개통의 평균 세대 및 인구수인 315세대 975명에 비하여 3배이상 많아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며 동문아파트 주민과 나머지 주민과의 불화가 끊이질 않고 있어 분통의 필요성이 있음 1997년 2월 5일 금촌1동장 안태영 			
찬 반 표 시	찬 성	○	반 대

종합의견서

대상지역	15 통	→	<table border="1"> <tr> <td>15 통</td> </tr> <tr> <td>18 통</td> </tr> </table>	15 통	18 통
15 통					
18 통					
○ 15통 지역은 1,218세대에 3,941명의 인구로서 금촌1동 17개통의 평균 세대 및 인구수인 315세대 975명에 비하여 3배이상 많아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며 동문아파트 주민과 나머지 주민과의 불화가 끊이질 않고 있고, 마을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문아파트 주민은 15통의 주민이라기 보다는 아파트 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길 원하고 있어 동문아파트 5동과 인근 상가를 15통에서 분리해 하나의 통으로 만드는 것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1997년 2월 일 15통장 장승만 					
찬반표시	찬성	○	반대		

반 분 리 (통 합) 조 서

1. 분리(통합) 내용

금촌2동 6통 9 ~ 13반	⇒	금촌2동 9통 1 ~ 17반 ※ 12개반 증설
-----------------	---	--

2. 분리(통합) 사유

- 금촌2동 6통 9 ~ 13반 지역은 아파트 단지로 1개통 증설에 따라 아파트별로 기존반을 재조정하고 아파트 신축으로 두보아파트 98세대, 대영장미아파트 192세대가 입주하여 2개반을 증설하고
- '97. 5월 대영장미아파트, 주공아파트 1,048세대가 입주예정으로 10개반을 증설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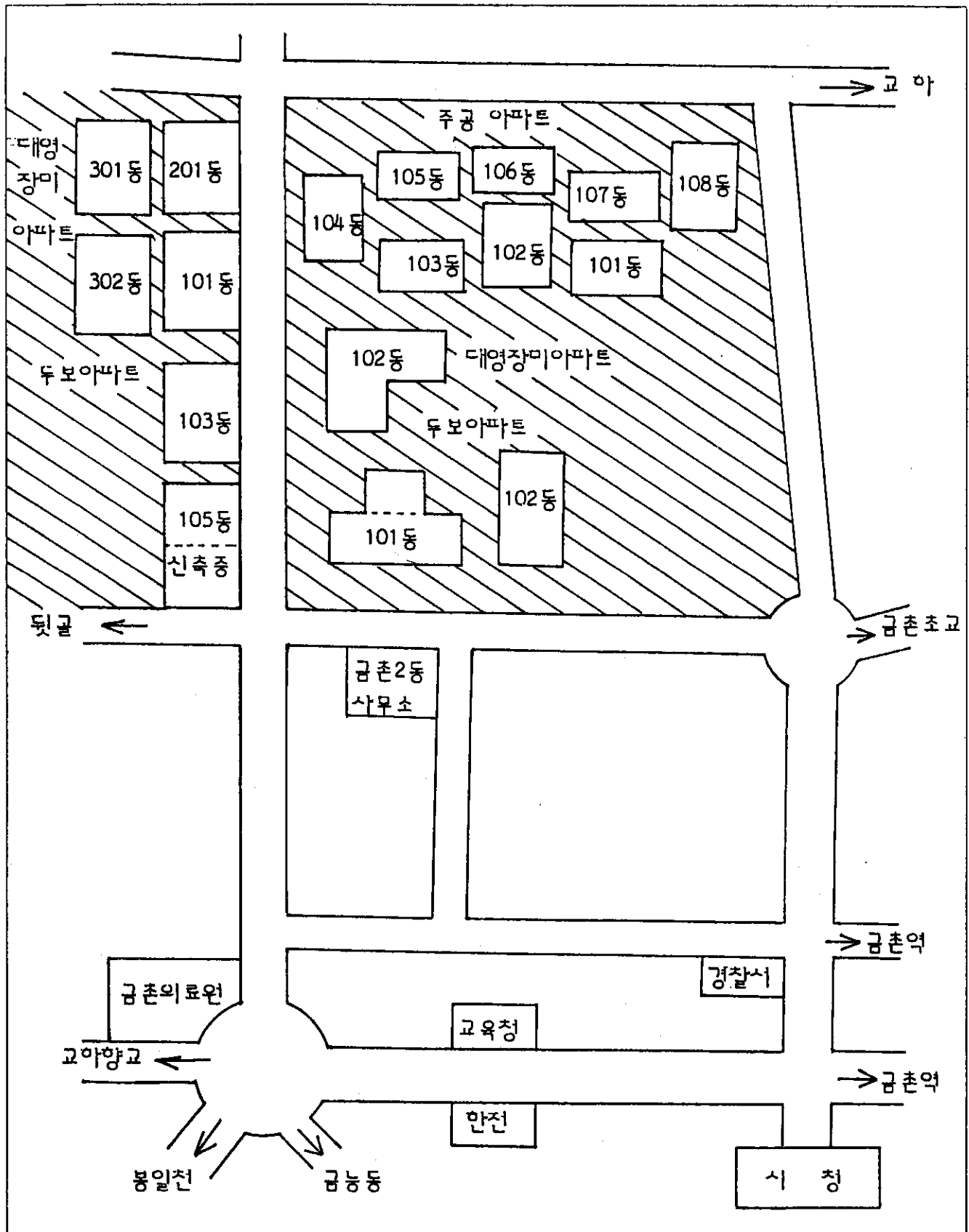
3. 분리후 반세

구 분	면적 (km ²)	가구(세대)	인구(명)	비 고
현재의 반				
신설의 반		"붙	임"	
잔 여 반				

구 분	면 적 (km ²)	가구 (세대)	인 구 (명)	비 고
현재의 반		762	2, 554	
신설의 반		75	279	1 반
		48	185	2 반
		75	267	3 반
		98	351	4 반
		144	381	5 반
		130	440	6 반
		192	651	7 반
		-	-	8 반
		-	-	9 반
		-	-	10반
		-	-	11반
		-	-	12반
		-	-	13반
		-	-	14반
		-	-	15반
		-	-	16반
		-	-	17반
잔 여 반	※ 기존반 재조정 및 12개반 증설로 잔여반 없음			

위 치 도

금촌2동



종 합 의 건 서

대 상 지 역	6통 9 - 13반	→	9통 1 - 17반
□ 금촌 2동 6통 9 - 13반의 경우 - 두보 1,2차아파트 296세대, 장미 1,2차아파트 466세대로 총 5개반 762세대 2,55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 향후 '97. 5월 주공아파트 769세대와 장미3차아파트 279세대 총 1,048세대 약3,300명이 입주예정으로 총아파트단지만 1,810세대 약 5,800명이 거주하게됨에 따라 기존 5개반장으로는 행정시책 전달은 물론 주민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 현실에 맞게 12개반을 증설하면 효율적인 통,반행정은 물론 주민생활의 불편함도 해소될 전망이다. - 반 증설은 주민들의 바라는 바이므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존 5개반을 17개반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997 년 2 월 일 금촌 2 동장 이 창 			
찬 반 표 시	찬 성	○	반 대

종 합 의 건 서

대 상 지 역	6통 9 - 13반	→	9통 1 - 17반
□ 금촌 2동 6통 9 - 13반의 경우 - 두보 1,2차아파트 296세대, 장미 1,2차아파트 466세대로 총 5개반 762세대 2,55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 향후 '97. 5월 주공아파트 769세대와 장미3차아파트 279세대 입주예정으로 기존 5개반장으로는 1,810세대 5,800명의 관리 및 행정시책등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 반 증설을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개발위원회와 반장들의 동의로 12개반의 증설을 건의합니다.			
1997 년 2 월 일 금촌 2동 6통장 한 길 수 			
찬 반 표 시	찬 성	○	반 대